

산업통상자원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

- 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- 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,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.7.1.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- 3. 2021.7.1.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특히,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(1~3단계)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.
-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가. 적용 기간: 2021.7.1.(목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 - * 거리두기 단계별(시범적용)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
 - 나. 적용 지역 : 전국(수도권/수도권 외 지역)
 - 다. 적용 단계
 - 수도권 : 거리두기 2단계
 - * 수도권은 7.1(목) 0시 ~ 7.14(수)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, 집회는 49인까지 가능
 - 수도권 외 지역 : 거리두기 1단계
 - 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 - 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- 대상 시설(35종)
- 1그룹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게임장
- 2그룹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2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이·미용업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기타시설(13종):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전문점, 전시회장·박람회장, 마사지업소·안마업소, 국제회의장·학술행사, 종교시설
- 고위험 사업장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- 조치 내용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1: (수도권) 다중이용시설 등(1~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붙임2: (수도권 외 지역) 다중이용시설 등(1~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② 교통시설

○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5: (전국)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③ 국공립시설

-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- 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
- ※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(카지노, 경륜·경마·경정 등)은 해당 수칙 적용

④ 모임·행사
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- 수도권 지역은 7.1.(목) 0시부터 7.14.(수) 24시까지 ▲사적 모임은 6인까지, ▲집회는 49명까지 가능
-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 내 감염양상을 고려 자율적으로 이행기간 적용 등 별도 조치 가능
 - (1단계) 참여인원 500인 이상인 경우,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,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· 협의

<협의 대상 행사(예시)>

법인 · 단체 · 공공기관 ·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- ※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대규모콘서트,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 수칙 적용
- 집회·시위 500인 이상 금지(500인 미만 집회·시위 방역지침 의무화)
- (2단계)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행사는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(집합·모임·행사 및 집회·시위 100인 이상 금지)
 - (시험) 수험생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 - 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방역수칙 준수

붙임3. (수도권)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붙임4. (수도권 외 지역)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⑤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⑥ 직장근무

○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권고 (1단계: 자율, 2단계: 300인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10% 권고)

⑨ 학교(등교)

○ 1단계, 2단계: 전면등교 가능

- 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,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
- 4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- 5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**홈페이지에 공지하고**, **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**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2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3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- 4.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5.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6.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.
 - 7.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전체본.
 - 8.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. 끝.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<mark>앙회, 전국경제인연</mark>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 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전결 2021.6.30. 주무관 **박혜수** 과장 **김재준**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763 (2021.6.30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http://www.moti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